㉾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[http://www.kma.org]/전화 02-6350-6587/전송(02)790-8911
현지조사대응센터 팀장 김종수[6582] 팀장 서일원[6586] 팀원 장운형[6587] / E-mail: mecanderj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31-05646호
기안일자 2017. 9. 8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2017년 9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(2017. 1)에 따라, 2017년 9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지[복지부-알림-요양기관현지조사-현지조사사전예고]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 2017년 9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1. 건강보험

가. 조사기간 : ’17. 9. 11.(월) ~ 9. 23.(토), (13일)
나. 대상기관수 : 22개소**(의과없음)**
1) 현장조사(4개소) : 치과의원 4
가) 조사방향
① 입·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
② 실제 진료(투약)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
③ 기타 부당청구 등
2) 서면조사(18개소) : 약국 18
가) 조사방향
① 약국 처방·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

2. 의료급여

가. 조사기간 : ’17. 9. 11.(월) ~ 9. 23.(토), (13일)

나. 대상기관수 : 10개소**(의과 7개소)**

1) 현장조사 : **병원 2, 요양병원 4, 의원 1**, 한의원 1, 약국 2

2) 조사방향

가) 입·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

나)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

다)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